

별첨1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대관지침>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이하 “갑”이라 한다)은 전시장을 대관함에 있어 대관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지침에 의거 신청서류에 의한 사전 심사 후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관목적)

“을”은 “갑”이 제공하는 시설을 전시회 혹은 “갑”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의 행사 유치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대관계약)

① 대관계약은 상호간의 직인이 찍힌 대관계약서를 작성한 뒤 “을”이 대관료의 40%를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제3조 (대관료)

① 대관료

현대미술관 2관			
구분	1실	2실	1실+ 2실
면적	297m ²	330m ²	627m ²
대관료(일주일 기준)	3,600,000원	4,000,000원	7,000,000원

가. 본교 교수(초빙, 겸임교수 포함) 개인전은 대관료의 50%가 할인된다.

나. 본교 강사 개인전 및 박사학위청구전은 대관료의 30%가 할인된다.

다. 동문 개인전 및 그룹전은 대관료의 20%가 할인된다.

라. 교수 그룹전 및 국제전은 대관료의 20%가 할인된다.

② “을”은 대관 시작 30일 전까지 대관료의 40%를 중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관 시작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대관 시작 30일 이내의 시점에서 대관계약을 체결 할 시 대관료의 80%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⑤ 대관료 납부는 ② ③ ④항에 의하되 부득이하게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기사유서와 납부각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방송, 영화, CF제작을 위한 대관료는 기본 대관료의 300%를 기본 대관료로 한다.
- ⑦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시 중단에 관해서 “갑”은 “을”에게 해당 대관일에 대한 대관료를 환불한다.

제4조 (대관기간)

전시장 기본 대관기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7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본 대관기간 외에 추가 대관을 원할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대관취소)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전시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대관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 나.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
 - 다. 미술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전시장 시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② “갑”이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의 중지를 명할 경우 “을”은 이를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대관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 (대관계약)

“을”이 전시장 대관계약 후 부득이하게 해약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해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 면 통 보 일	반 환 금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납부 전까지	계약금의 10% 반환
중도금 납부 이후부터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총 납부금액의 30% 반환
대관시작 13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총 납부금액의 20% 반환
대관시작 2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총 납부금액의 10% 반환

제7조 (전시, 작품 반입 및 반출)

- ① 전시장의 개관시간은 10:00-18:00로 한다.



- ② “을”이 대관료 잔금을 대관 시작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작품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 ③ 전시, 작품 반입 및 반출은 전시장 개관시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작품 반입 및 전시 준비는 화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작품 반출은 월요일 오후 1시부터 개관시간 종료시까지이며 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작품들에 대하여 “갑”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 다. 지정한 시간 내에 반출하지 않아 다음 계약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갑”은 “을”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라. 지정한 시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갑”이 임의로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및 손상에 대하여 “갑”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 마.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운반, 보관료, 폐기비용 등)은 제9조의 예치금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예치금으로도 이 금액을 차감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의 작품을 “갑”이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회수하고 잔액은 공탁한다.
- ④ 작품 설치 시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들은 “갑”과 협의해야 한다.
- ⑤ 전시 개막식은 수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작품 반출 후 전시장의 청결 및 시설 상황의 이상 유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을”은 시설보수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부대시설 사용 및 시설이용)

- ① “을”은 이동식 칸막이, 조명 등 시설의 위치변경, 제거, 추가설치 할 경우 반드시 “갑”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을”은 전시대, 와이어 등 기타 시설 이용 시 “갑”에게 사용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품 철수 시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작품 설치 시 못이나 나사못 등 전시장 벽에 손상이 가는 것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
- ④ 설치작업의 경우 “을”은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과도한 전력이 사용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관료 외에 “갑”이 지정하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전시장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을”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파손 및 훼손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⑦ 대관기간동안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⑧ 화환 및 대형 화분의 전시장 내부 반입은 절대 금지되며, 전시장 외부에 두었던 화환, 화분 등과 전시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및 기타 모든 폐기물은 “을”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보증금 및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

“을”은 하자보증금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잔금 납부 시 예치하였다가 작품 철수와 전시장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 하자가 없을 때 반환받는다.

대관장소	2관 1실	2관 2실	2관 1실+2실
금액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제10조 (사용권 양도 및 대관일정 변경)

① “을”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 “을”이 대관신청 시 제출했던 계획서의 전시명, 내용, 주요작가 등은 “갑”의 승인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변경 시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을”의 요청에 의한 전시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술관 전체 전시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갑”의 판단에 따른다.

④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을”과 상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다음 해로의 이월은 불가하다.

제11조 (홍보물 및 현수막 설치)

① “을”이 전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설치를 할 경우에는 본 미술관 로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관람객들의 원활한 전시 안내를 위하여 미술관 입구 외벽에 현수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는 “을”이 제작비를 부담한다.

가. “을”이 1실, 2실 전관을 대관할 경우, 또는 1실, 2실 중 1개 전시실이 비어있고 1개 전시실만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을”은 242 x 211 cm 의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나. 1실, 2실 2개 전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을”은 120 x 210 cm (가로x세로) 의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책임한계 및 관리)

- ① 작품 전시기간 중 “을”의 작품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을”에게 있다.
가. 대관 중 모든 전시장 작품 관리는 “을”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은 전시장 실 별 관리인을 1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무단으로 비우지 아니한다.
- ② “을”은 대관기간 중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천재지변, 화재 발생, 전시품 도난, 작품파손, 기타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시작품에 관하여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전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일반 관람자가 “을”의 작품을 관람하다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3조 (화재예방)

- ① “을”은 전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전시장 내에서는 금연(禁煙)한다.
나. 전시종료 후에는 화원(火源)을 철저히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다. 위험물을 전시장 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전시장 내에는 “갑”의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
마. 전시장치물로 사용하는 자재는 방염되었거나 불연성인 자재를 사용한다.

제14조 (촬영 및 부대행사)

전시기간 중 행해지는 작품전시 촬영 및 부대행사 진행 시 미술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갑”에게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인쇄물 제공)

“을”은 제작한 모든 인쇄물을 각 3부씩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어해석)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분쟁해결)

이 계약에 관하여 “갑”, “을”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로 한다.

제18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갑”과 “을”간의 계약서에 첨부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